

# 양계업자의 소득세 절세방안



지난 3월호에는 양계업자의 세법상 소득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번호에서는 소득세 산출방법과 세액의 계산과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 • 소득세의 산출방법

소득세액 = (소득금액 - 비과세 및 소득공제액 - 국민연금 불입액 - 연금보험 불입액 - 부양가족공제 - 표준공제) × 세율 - 세액공제  
표준공제는 사업용 계좌번호를 개설한 자는 100만원, 그렇지 않은 축산업자는 60만원임.

## 1.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 1) 비과세 대상자

모든 축산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장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장하지 않는 축산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축협 등 타 직장이 있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2) 농가부업소득비과세 금액

매년 15,000수에 대한 소득(이하 “두수공제액”이라 함)과 1,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2007년도까지는 10,000수를 공제하였음).

두수공제액은 총소득금액을 사육두수로 나누고 15,000수를 곱하여 산출하는데, 여기서 사육두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3) 육계업자의 소득세

예를들어 기장하지 않고 세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2008년도 육계업자의 매 회당 사육두수가 8만수이고 1년에 5회전하여 매출액이 8억원이라면, 평균 성계두수는 16,500두 정도가 되어 두수공제액은 625만원이 되고, 4인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액을 산출할 경우 소득세액은 산출되지 않는다.

#### 4) 산란계업자의 소득세

역시 기장하지 않고 세법에 따라 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 예를들어 산란계 사육업자의 2008년도 매출액이 8억원인 농장의 경우, 월평균 사육두수가 32,000수라고 볼 때에 사육두수 중 성계의 마리수는 약 23,000수가 되고 두수공제액은 4,486만원이 되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액을 산출해보면 35만원정도 된다(국민연금납부액 100만원으로 가정함).

### 2. 투자세액공제

축산용 시설을 구입한 경우 구입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축산용 시설이라 함은 건물을 제외한 축산용에 사용되는 시설 및 기자재를 말한다. 예를들어 자동 급이기를 5,000만원에 구입한 경우에는 350만원(5,000만원 7%)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커서 금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그 다음해 이후 5년간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축산용 시설을 구입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수취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축산업자들이 이를 공제받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 3. 중소기업세액감면

축산업의 경우 종업원이 50명이하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이중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소기업** :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30%(수도권 및 경기도 소재농장의 경우 20%)

**중소기업** :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15%(수도권 및 경기도 소재농장은 감면 안 됨)

### 4. 양계업자의 소득세 부담액

개인으로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2008년도의 세법개정으로 농가부업소득비과세의 범위가 확대되어 육계업자의 경우 연간 12억원까지, 산란계의 경우에는 8억원까지 기장하지 않아도 소득세가 산출되지 않거나 수십만원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것은 매출액에 대한 세무처리(계산서의 발행 등)만 하면 되고, 이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사료, 약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행위)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대규모로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이외의 대부분의 양계업자는 세무처리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되고, 또한 닭 출하시 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실상의 매출액을 세무 신고해도 기장이나 증빙의 수취 등 세무상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부담액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양계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부담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간접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는 현실이다.

### 5.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액

한편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비가 인상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보험료는 소득금액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위에서 설명한 '농가부업소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늘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 문의 : (02)552-6100 대한회계법인